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5.

발 의 자 : 이훈기 · 이상식 · 김기표
이용우 · 이재관 · 김주영
송재봉 · 이병진 · 신장식
박홍배 · 김문수 · 김 윤
김준혁 · 김용만 · 박용갑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미디어의 정책 · 진흥 · 규제가 3개 부처(과기정통부 · 방통위 · 문체부)로 분산되어 미디어 생태계 급속한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고,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렵고, 미디어산업 발전에 역행.

이로 인해 미디어정책의 통일성 · 전문성 · 집중성 · 효율성이 약화 되고,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지원 · 육성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의 동력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, 인공지능(AI)기술 접목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용 등에 대한 정책 대응이 매우 부실하고 비효율적임.

나아가 3개 부처 간 이해 충돌 또는 주관기관 논란으로 정부의 지원 또는 규제 개선이 지연되거나 방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, 3개 부처의 중복적 관리 · 감독으로 사업자의 부담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음.

아울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(OTT) 등 방송영상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형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 정책의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,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는 거의 고착 수준에 이르고 있음.

따라서 콘텐츠의 특성 및 장르에 따른 창의적 제작·공급을 획기적으로 지원·육성하고, 국내 방송영상사업자에 대한 제작 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사업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절차의 편의성 도모, 시대에 역행하는 편성 및 광고의 신속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·콘텐츠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독립제 부처 신설이 필요함.

즉, 현재 방통위, 과기정통부, 문체부 등 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를 포함하는 미디어 관련 산업 진흥 업무를 통합·포괄하는 독립제 행정부처 「미디어콘텐츠부」를 신설하여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임.

동시에, 정치적 방송통제·간섭기구로 전락하거나, 악용되었던 기존의 「방송통신위원회」는 폐지하고, 민주주의 핵심 기능으로서 공론의 장 보호와 ‘보도기능’을 가지고 있는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 및 공공·공익성 가치 준수를 감독하고, 아울러 시청자 주권 보호 및 이용자 분쟁 조정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「공공미디어위원회」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.

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분야 및 신문,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분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 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분리 후 통합 관장하는 「미디어콘텐츠부」를 신설하고자 함(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훈기위원이 대표발의한 「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35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
공공미디어위원회

제26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. 미디어콘텐츠부

제29조제1항 중 “방송·통신의 융합·진흥 및 전파관리, 정보통신산업”을 “전파관리,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의 진흥·규제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문화·예술·영상·광고·출판·간행물·체육·관광,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”를 “문화·예술·출판·간행물·체육·관광에”로 한다.

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(미디어콘텐츠부) 미디어콘텐츠부장관은 방송·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, 방송·영상과 정보통신 또는 인공지능의 융합, 온라인동영상서비스, 1인 미디어, 신문 및 인터넷신문, 잡지 등 정기간행물, 뉴스통신, 인터넷뉴스서비스, 방송·영상·신문·인쇄·온라인·정부광고,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직 개편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방송·통신의 융합·진흥에 관한 사무	미디어콘텐츠부장관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영상·광고,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	미디어콘텐츠부장관

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(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미디어콘텐츠부
문화체육관광부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미디어콘텐츠부

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

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부령으로 본다.

제3조(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·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·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·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같은 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)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,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,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,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,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) ① (생략)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·처·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,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. 1. 「 <u>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u> 」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. ~ 4. (생략) ③ ~ ⑩ (생략)	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「 <u>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u> 」 제3조에 따른 공공미디어위원회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⑩ (현행과 같음)
제26조(행정각부)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. 1. ~ 19. (생략) <u><신 설></u> ②·③ (생략)	제26조(행정각부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19. (현행과 같음) <u>20. 미디어콘텐츠부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9조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·평가, 과학기술의 연구개	제29조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① ----- ----- -----

발 · 협력 · 진흥, 과학기술인력
양성, 원자력 연구 · 개발 · 생
산 · 이용, 국가정보화 기획 ·
정보보호 · 정보문화, 방송 · 통
신의 융합 · 진흥 및 전파관리,
정보통신산업, 우편 · 우편환
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
장한다.

② (생략)

제36조(문화체육관광부) ① 문화
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· 예술
· 영상 · 광고 · 출판 · 간행물 ·
체육 · 관광, 국정에 대한 홍보
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
장한다.

② ~ ③ (생략)

<신설>

-- 전파관리, 인공지능 및 정보
통신의 진흥 · 규제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문화체육관광부) ① ----
-----문화 · 예술
· 출판 · 간행물 · 체육 · 관광에

-----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46조(미디어콘텐츠부) 미디어콘
텐츠부장관은 방송 · 영상 플랫
폼 및 콘텐츠, 방송 · 영상과 정
보통신 또는 인공지능의 융합,
온라인동영상서비스, 1인 미디
어, 신문 및 인터넷신문, 잡지
등 정기간행물, 뉴스통신, 인터
넷뉴스서비스, 방송 · 영상 · 신
문 · 인쇄 · 온라인 · 정부광고,
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

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